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가단1121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1. B 주식회사

2.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9. 7. 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292,638원과 그 중 409,274,300원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292,638원과 그 중 409,274,300원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

판사김태업

별지